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6

2020. 10. 23.(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연 철 흠 의원 등 8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10월 14일
-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연철흠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유지기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제5조 제3항에서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공기질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
- 안 제6조는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9. 15.～`20. 9. 3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용”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광역단체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이산화탄소, 폼알데이드, 일산화탄소 등 3개 항목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지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충북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2 “나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평균오염도 측정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기온, 측정시기, 대상별, 장소별, 실내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평균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준을 일부 강화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적의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위 사항을 포함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등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유효기간 중 현장 점검 결과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미달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유효기간 및 취소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관련)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PM-10) (㎍/㎥)	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	법 기준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조례 기준	100 이하	50 이하	**9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법 기준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조례 기준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9 이하**
다. 실내주차장	법 기준	20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25 이하
	조례 기준	200 이하	-	**900 이하**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등	법 기준	200 이하	-	-	-	-	-
	조례 기준	200 이하	-	-	-	-	-

관 계 법 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2020. 5. 26.>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본조신설 2013. 6. 12.]

[제목개정 2015. 12. 22.]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2020. 5. 26.>

③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2020. 5. 26.>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2020. 5. 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①「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3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② 삭제 <2016. 12. 20.>

③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 3. 18.>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기관
2. 산후조리원
3. 노인요양시설
4. 어린이집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폼알데하이드

[본조신설 2020. 3. 31.]

□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이 조례안 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어「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